

의안
번호

924

【울산광역시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·제출자 : 2012. 10. 09(화)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2. 10. 12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2. 10. 18(목)

2. 개정이유

자치단체 민원수수료 납부 수단으로서 종이수입증지 사용의 불편 해소 및 위·변조 방지를 통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제증명 전자수입증지 사용

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제증명 발급시 종이수입 증지 대신 전자 수입증지를 통하여 발급

나. 인용조문 수정

제5조 및 제5조의2 인용조문 “제4조” 를 “제3조” 로 수정

4. 관련법규 등

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1조(민원행정제도개선계획 등)

5. 참고사항

- 가. 예산 조치 등 관련부서 협의사항 : 해당없음
- 나. 입법 예고 결과 : 2012. 7. 26. ~ 8. 14.(의견없음)

6. 검토의견

- ▶ 본 조례 개정안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(민원행저제도 개선계획 등) 및 행정안전부 구술, 전자서명 민원신청제 확대시행지침,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 제증명 전자수입증지 전자서명 적용 지침(12,3,2)에 의거 종이 수입증지 사용불편 및 위.변조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 제증명 발급 시 종이수입증지 대신 전자수입증지를 통하여 민원서류를 발급하므로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